평창포레스토피아 산림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 회 의 견 청 취 안

2011. 10.

제출자 : 평창군수(산림과장)

평창포레스토피아 산림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 회 의 견 청 취 안

의안 번호	88

제출년월일 : 2011. 10.
제 출 자 : 평창군수(산림과장)

1. 제안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2009년 5월『산림수도 평창』선포하고,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특화사업의 발굴 대두

○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특구로서 이미지를 강화하고 특화사업과 관련된 민간기업의 참여 및 유치 활성화를 위해 평창포레스토아 산림산업특구 지정을 추진

○ 산림포레스토피아 산림산업특구 지정 신청안에 대하여「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HAPPY700 자연휴양림
  - 봉평면 무이리 일원 - 546,625㎡

○ 비밀의 정원
  - 방림면 계촌리(창수동) 일원 - 184,779㎡

3. 참고사항

○ 공 고 : 2011. 8. 29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 주민공람 : 2011. 8. 29 ~ 9. 15
  - 제출의견 없음

○ 주민공청회 개최 : 제출의견 없음
  - 비밀의 정원
    · 개최일시 : 2011. 9. 22 14:00 ~
    · 개최장소 : 계촌리 구 수동분교
  - 해피700 자연휴양림
    · 개최일시 : 2011. 9. 23 10:00 ~
    · 개최장소 : 봉평면사무소 대회의실

평창포레스토피아 산림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 회 의 견 청 취 안

[1] 특구의 명칭: 평창 포레스토피아 산림산업 특구

□ 산림(FOREST)과 이상향(UTOPIA)의 합성어

○ 휴양, 치유, 레저, 문화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유토피아 공간을 마련한다는 의미

○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측면에서의 특화사업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을 마련

○ '포레스토피아'는 특구의 개념·목표를 내포하고 있다면, '산림산업'은 특구의 성격·특성을 내포하고 있음

[2] 특구의 위치와 면적

□ 위치: 평창군 봉평면, 방림면 일대(전체 730,404㎡)

해피700 자연휴양림	
위치	봉평면 무이리 일원
면적	545,625㎡, 2필지
비밀의 정원	
위치	방림면 계촌리 일원
면적	184,779㎡, 51필지

[3] 특구의 대외적 표시방법

□ 표시방법: 평창 포레스토피아 산림산업 특구

Pyeongchang Forestopia Special Zone

[4] 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특구의 지정 목적

○ 평창군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사업을 시도 중이며, 2009년에는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

○ '산림수도 평창' 선포 이후, 평창군 내 부존하는 산림자원의 효과적 이용과 부가가치 증대 방안, 지역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

○ 특히 소득 증대와 함께 참살이 문화를 중시하는 생활양식의 변화로 산림휴양·치유, 산림문화·교육, 산림관광·체험 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추진

○ 평창 포레스토피아 산림산업 특구 지정의 목적은 이러한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범위 내 규제 특례를 발굴하여 특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제반사항을 마련하는 데 있음.

○ 또한 산림산업 특구로서의 지역 이미지를 강화하여 향후 민간 참여·유치 및 공공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 활성화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음.

특구지정의 정책적·경제적 필요성

1) 정책적 필요성

○ 평창군 내 부존하는 다양한 산림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통해 부가가치

를 극대화하고, 조성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성격의 계획보다는 전략적 성격의 계획이 요구되는 시점임. 즉 지역 고유의 지리적·문화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인 산림산업을 중심의 지역 특화사업과 규제특례를 적용한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년) 주민설문에 따르면, 특구지정 추진에 대해서 응답자 중 71.4%가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하여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평창 지역적 이미지에 질문에서는 '청정·관광 중심지'라는 응답이 58.1%, '환경·생태 중심지'는 27.2%로 나타나 Happy700 이미지에 부합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2) 경제적 필요성

○ 평창군은 전국 시·군·구중 4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구는 44,303명(18,499세대)에 불과함. 산지가 82%에 이르고 풍부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생태관광의 중심도시지만, 개발에는 제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조사(2010년, AHP)에 따르면, 특화사업 부문의 제 1순위로 산림휴양(치유)·문화 부문을 꼽았으며, 2순위로 마을단위특화사업 부문, 3순위로 한방바이오산업 부문, 4순위로 목재품산업 부문을 꼽았음. 또한 산림휴양(치유)·문화 부문은 경제적 타당성과 산업화 가능성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기도 하였음.

평가기준별 특화사업(군) 우선순위 분석

사업군	경제적 타당성	산업화 가능성	정치적 수용성	지역의 고유성	가중치	순위
한방바이오	0.222	0.212	0.178	0.188	0.200	4
목재품산업	0.222	0.226	0.230	0.242	0.230	3
산림휴양문화	0.307	0.296	0.296	0.301	0.306	1
마을단위특화	0.249	0.295	0.295	0.269	0.264	2

특구지정의 기대효과

1) 평창 산림수도의 제도적 기반 마련

○ 특구의 지정과 특화사업의 실행은 '산림수도 평창' 10개년 육성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평창지역이 산림산업의 중심권역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임.

2) 규제특례 등 특화사업 실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특화사업(해피700 자연휴양림, 비밀의 정원) 실행에 있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그 결과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 산림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 마련

3) 미개발지역의 적극적인 자원 활용으로 지역 균형발전 토대 마련

○ 남부권역에 부존하는 잠재적 산림자원(계곡, 산림, 목재 등)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5] 특화사업

특화사업의 명칭

1) 해피700 자연휴양림

○ 자연휴양림은 산림 내 체류하면서 휴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시설만을 설치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임. 자연자원 중심의 이용과 저밀도 개발, 자연학습장 등을 제공

※ 본 사업은 확정·시공된 사업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요구하지 않음. 다만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특례를 적용

2) 비밀의 정원

○ 창수동 계곡 일대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시설 중심이 아닌 프로그램 중심의 생태관광·체험을 위한 공간임.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 명상 수행, 삼림욕, 문화 이벤트, 정원 경관, 야생화 가꾸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 본 사업은 강원도·평창군의 숙원사업으로 예산확보 중에 있음. 또한 문화관광부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 구상에 반영된 사항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특례를 적용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1) 연도별 투자계획

○ 특화사업의 전체 투자액은 총 104.36억 원으로 해피700 자연휴양림에 38.8억 원, 비밀의 정원 65.56억 원이 소요될 전망

특화사업명	연 도 별 사 업 비 (억 원)					
	계	2012년 이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04.360	30.800	2.000	2.000	34.780	34.780
해피700 자연휴양림	38.800	30.800	2.000	2.000	2.000	2.000
비밀의 정원	65.560	0.000	0.000	0.000	32.780	32.780

2) 재원별 투자계획

○ 전체 사업비 중 국비 48.18억 원, 도비 24.09억 원, 군비 32.09억 원이 소요될 전망

특화사업명	재 원 별 사 업 비 (억 원)					
	계	국 비	도 비	군 비	민간	기타
계	96.360	48.180	24.090	32.090	-	-
해피700 자연휴양림	38.800	15.400	7.700	15.700	-	-
비밀의 정원	65.560	32.780	16.390	16.390	-	-

[6] 특화사업자

○ 성 명 : 평창군수

○ 주 소 : (평창군)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7] 특구토지이용계획(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8] 규제특례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1) 해피700 자연휴양림

구분	규제특례사항	규제사항	필요성	적용범위
일반 규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23조)	-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주변, 한변10m이상, 옥상간판, 애드벌룬, 선전탑 등은 허가사항	- HAPPY700자연휴양림의 선전탑 및 광고판 설치를 통해 탐방객 유도	- HAPPY700자연휴양림 주변 - 영동고속도로 장평IC - 국도 6호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7조)	- 공익적기능 증진을 위한 임도 설치시 산림청장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	- 휴양림내 전망데크, 스카이로드 등 임도 설치 필요	- 특구관할지자체장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
	산리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7조의 2)	- 산지전용허가 요건 중 보전산지가 100분의 10이하 일 것 (대통령령)	- 보전산지 편입에 따른 개발행위 특례 적용 필요	- 보전산지 편입 비율 그 상한의 150% 적용(보전산지 비율 100분의 15이하 적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1조)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적	- 통보기간 2개월 이상 - 통보 및 공고(보건복지부령)

		등의 처리 시 3개월 이상 통보 - 보건복지부령 공고방식 이행	용 필요	에 관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제36조)	- 매각가능 국유재산은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	- 특화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통합적 개발을 위해 매수	- 매각가능 국유재산을 총괄청과 협의후 수의계약으로 매입 가능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특례법 제22조)	- 통행의 금지 및 제한(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고유권한)	- 행사시 사고방지, 교통안전, 방문객의 통행로 확보 필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도로통행 제한 등 조치 요청할 수 있음 - HAPPY700자연휴양림 주변(국도 6호선)

2) 비밀의 정원

구분	규제특례사항	규제사항	필요성	적용범위
일반 규제 특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7조)	- 공익적기능 증진을 위한 임도 설치시 산림청장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	- 초록비밀이야기 탐방로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해 필요	- 특구관할지자체장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
	산리관리법에 관한 특례(제27조의 2)	- 산지전용허가 요건 중 보전산지가 100분의 10이하 일것(대통령령)	- 보전산지 편입에 따른 개발행위 특례 적용 필요	- 보전산지 편입 비율 그 상한의 150% 적용(보전산지 비율 100분의 15이하 적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1조)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시 3개월 이상 통보 - 보건복지부령 공고방식 이행	-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적용 필요	- 통보기간 2개월 이상 - 통보 및 공고(보건복지부령)에 관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제36조)	- 매각가능 국유재산은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	- 특화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통합적 개발을 위해 매	- 매각가능 국유재산을 총괄청과 협의후 수의계약으로 매입 가능

			수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22조)	- 통행의 금지 및 제한(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고유권한)	- 행사시 사고방지, 교통안전, 방문객의 통행로 확보 필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도로통행 제한 등 조치 요청할 수 있음 - HAPPY700자연휴양림 주변 (국도 6호선)

※ 기타 특례 검토사항

구분	규제특례사항	필요성	적용범위
일반 규제 특례	건축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제36조의10)	- 야외공연장 산림문화테마지구 주요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	- 야외공연장 및 산림문화테마지구 주요시설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특례법제36조의12)	-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한 토지의 수용 및 이용을 위해 필요	- 치유의 숲 조성 필지의 토지 수용 및 이용
	산업집적활성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특례법제36조의 7)	- 생산단지 및 공장의 지식산업센터의 입지를 위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하향조정을 위해 필요	- 목재생산 및 목제품 가공시설의 설립
권한 이양 특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특례법 제41조)	- 휴양림내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승인 필요	- 테라피 로드, 숲속운동장 설치 및 이용

[9] 재원조달방법

특화사업명	연도별 사업비(억 원)							재원확보 계획
	합 계		2012년 이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계	104.360	30.800	2.000	2.000	34.780	34.780	대부분 확정사업이나, 일부 국비사업(민자부담)을 통해 재원 조달 예정
	국비	48.180	12.225	0.000	0.000	16.390	16.390	
	도비	24.090	6.112	0.000	0.000	8.195	8.195	
	군비	32.090	12.463	2.000	2.000	10.195	10.195	
	민자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해피700 자연휴양림	계	38.800	30.800	2.000	2.000	2.000	2.000	본 사업은 확정 완료 사업으로 운영단계에 있으며, 군자체예산으로 집행 예정
	국비	15.400	15.400	0.000	0.000	0.000	0.000	
	도비	7.700	7.700	0.000	0.000	0.000	0.000	
	군비	25.700	7.700	2.000	2.000	2.000	2.000	
	민자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비밀의 정원	계	65.560	0.000	0.000	0.000	32.780	32.780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한국관광공사 광역관광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 예정
	국비	32.780	0.000	0.000	0.000	16.390	16.390	
	도비	16.390	0.000	0.000	0.000	8.195	8.195	
	군비	16.390	0.000	0.000	0.000	8.195	8.195	
	민자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0]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방안: 해당 없음

○ 평창군 일원의 특구 대상지역은 주로 도심이나 신설도로와 떨어져 있는 산간지역으로 토지투기의 우려가 없어 별도의 토지거래 등에 대한 조치가 불필요한 지역임

[11]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12]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1) 해피700 자연휴양림

- 없음

2) 비밀의 정원

- 없음

[13]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예정)

○ 예정

[1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그 결과: 해당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평창군 특구계획은 토지이용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해당사항 없음.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7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15] 조례로 정할 주요 특례규제 세부내용: 해당 없음

○ 해당사항 없음

[붙임서류]

□ 특화사업별 필지 조서

1) 해피700 자연휴양림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	소유자
	읍면	리	지번			
1	봉평면	무이리	산81	임	457,983	평창군
2	봉평면	무이리	산204-1	임	-	평창군

* 본 필지 조서는 아직 미확정 지번으로 최종 지구지정 지번과 다를 수 있음.

지목	임야	면적	457,983 ㎡
개별공시지가	474원 (2011/01)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휴양림구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2) 비밀의 정원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읍면	리	지번			
1	방림	계촌	산 20	임	443,504	평창군
2	방림	계촌	산 268	임	84,099	평창군
3	방림	계촌	산 297	임	79,835	평창군
4	방림	계촌	외 48	-	-	사유지

* 본 필지 조서는 아직 미확정 지번으로 최종 지구지정 지번과 다를 수 있음.

지목	임야	면적	84,099 ㎡
개별공시지가	256원 (2011/01)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관계법규 발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략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